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의 상시 하부기구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대본부장(행안부·외교부장관·원안위위원장) 또는 차장(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인 경우)을 보좌하기 위한 특별대응단장 등 설치

- 1) 재난수습에 민간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민간전문가의 중앙대책본부 참여 및 자문 등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나.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구성인원에 민간전문가 추가

- 1) 재난 발생시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연구개발·조사 및 홍보 등 전문적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인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이하 “특별대응단장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응단장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1. 특별대응단장등: 차장이 해당 재난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2. 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대변인: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4.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제15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별대응단장등: 해당 재난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5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을 “차장·특별대응단장등·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된다”를 “되고, 외교부장관이 해당 재난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을 “특별대응단장등·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1. 특별대응단장등: 차장이 해당 재난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을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 중”을 “장 및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 중”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나.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다.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	① ----- ----- ----- ----- ----- ----- ----- ----- ----- 두며, 연구개발·조사 및 홍보 등 전문적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인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이하 “특별대응단장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응단장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③ ----- ----- -----

호의 사람이 차장 · 총괄조정관 · 대변인 · 통제관 · 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 · 총괄조정관 · 대변인 · 통제관 · 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신설>

----- 차장 · 특별대응단장 등 · 총괄조정관 · 대변인 · 통제관 · 부대변인-----.

1. (현행과 같음)

2. 특별대응단장등: 해당 재난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제3항-----

--- 되고, 외교부장관이 해당 재난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이 된다.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 · 총괄조정관 · 대변인 · 통제관 · 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1. 특별대응단장등: 차장이 해당 재난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1. 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대변인: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3.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2. 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대변인: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4.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삭 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신 설>

1. · 2. (생략)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⑥ 제5항-----

----- 특별대응단장등 · 총
괄조정관 · 대변인 · 통제관 · 부
대변--.

1. 특별대응단장등: 차장이 해당 재난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제7항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 사람 중
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하는 -----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

2. <u>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u> 3. <u>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u>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u>장</u>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u>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u> <u>나.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u> <u>다.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u> 2. <u>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u> <u><삭 제></u> ② ----- ----- ----- ----- ----- <u>장</u> 및 <u>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u> 중-----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5225